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40호, 2023. 12. 26. 공포, 2024. 6. 27. 시행)됨에 따라,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. . ~ 2024. . 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집의 설치기준) 법 제32조제2항 제3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한다. 1. 제19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2. 제19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다목의 설치기준	<삭 제>
제17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)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2. 시설 및 설비 목록(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	<삭 제>

포함한다)

3.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
표시된 평면도(해당 특별자치시
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 소속
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
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
해당한다)

4. 운영계획서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「전자
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
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
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
경우만 해당한다)

2. 건축물대장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장애
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
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
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18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
집의 지정취소) 특별자치시장 ·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

<삭 제>

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9조(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)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: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
2.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: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

<삭 제>